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실무편람

2007. 1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목 차

I.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 1

1. 법률적 근거 · 1
2.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1
3. 국가자격증 제도의 의의 · 2
4. 추진경과 · 2

II. 보육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 3

1. 보육시설장 자격요건 · 3
2.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 4

III.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 7

1. 검정주체 · 7
2. 자격검정 일반원칙 · 7
3.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8
4. 자격인정시점 · 9
5. 관련경력 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 10

IV. 시기별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세부기준 | 12

1. 현행규정('05. 1. 30. 이후 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 12
2. 종전규정('05. 1. 29. 이전 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 29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 45
4. 보육시설 및 보육종자사 자격 변천 · 54

V.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 67

1. 자격증 발급 주체 및 자격증의 종류 · 67
2.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양식 · 68
3.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절차 · 69
4.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인터넷 발급 신청 요령 · 70
5.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77

VI.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80

1. 자격증 신청관련 공통 질의사항 · 80
2. 보육시설장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 83
3.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 84

<별첨> 현직 보육시설장 권역별 자격증 발급 신청 시기 | 86

I.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1. 법률적 근거

- '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부칙①에서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06. 12. 30.부터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근거법률>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 12. 29>

2.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그 동안 보육시설장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자격 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여 자격을 인정하여 온 바, 자격제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또한, 보육시설 및 시군구청에서 시설장 자격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온 바, 복잡한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 주체의 부재로 시·군·구청 보육담당자는 시설장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단일한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장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국가자격증 제도의 의의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통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관리는 시설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설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4. 추진경과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05. 1. 29. 법 개정)
 - ※ 부칙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06. 12. 30.부터 시행토록 명시
- 국가자격증 발급 기본계획 수립('06. 5월)
- 국가자격증 발급 안내서 발간·배포('06. 8월)
- 자격 검정 기준 마련('06. 11월)
- 자격증 발급 전산 프로그램 개발('06. 6. 29. ~ '06. 12. 29.)
- 자격증 발급 업무 개시('06. 12. 30.)

Ⅱ. 보육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1. 보육시설장 자격요건

-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21조)
 - 따라서, 2007년(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후)부터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관할 시·군·구청장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시설장 자격 적격여부를 가능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설장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2006. 12. 30.) 전에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어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2007. 12. 29.까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법 부칙②)
 - 따라서, 현재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7. 12. 29.까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자격증 발급신청은 가능한 지역별 발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지역별 발급신청 시기 : 붙임 참조

2.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가. 개요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은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후, 2005. 1. 30. 영유아보육법령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 시기별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 현행규정('05. 1. 30. 개정 법)에 의한 자격기준

- '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 법 개정으로 시설장 자격 종류는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등으로 세분화 되었고, 자격기준 또한 일부 변경된 바, 개정 법 시행 전('05. 1. 29.)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05. 1. 29.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시>

Q : 2005. 1. 29.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1994. 2. 20.)한 후 보육시설에 4년 6개월 근무한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및 인정 시점은?

A :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인정 시점 2005. 1. 30.

- 보육교사 1급을 2005. 1. 29.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 : 불인정(5년 근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 2차적으로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 : 인정
 - 현행 규정은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이 인정
 - 다만, 보육시설 종사경력 2년 경과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자격 인정 시점은 2005. 1. 30.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 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 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종전규정('05. 1. 29. 이전)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 종전 법('05. 1. 30. 전면개정 전)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05. 1. 29. 이전까지 종전 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으나,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05. 1. 29.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의 시설장 자격은 그대로 인정함.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p>1991. 8. 8. - 1996.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p>1996. 1. 6 - 2005.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동일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996. 1. 6> 8.~9. 동일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96·1·6> 11. 삭제 <96·1·6> 12. 동일
<p>(중복) 1998. 9. 4 - 2005. 1. 29.</p>	<p>외국에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p>

Ⅲ.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1. 검정주체

- 보육시설장 자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해당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 설치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보육시설장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07. 1월부터 보육종사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업무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2. 자격검정 일반원칙

- 시설장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별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검정한다.
- '05. 1. 29.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검정하고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한다.
- '05. 1. 29. 이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및 '05. 1. 30. 이후에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현행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검정하고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한다.

3.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종전규정('05. 1. 30. 법 개정 전)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에 대한 경과

- '05. 1. 30. 법 개정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변경된 바,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시설장 자격을 인정한다.
- '05. 1. 30. 현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하고 졸업할 경우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한다.
- '05. 1. 30.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경우 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인정한다.
- '05. 1. 29 당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 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인정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91. 8. 8.) 전 채용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1. 8. 8. 제정된 바, 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한다 (1991. 8. 8. 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 8. 8.)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사업장육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1991. 8. 7 이전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자격인정시점

가. 자격인정시점 판단 기준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에는 자격인정시점이 명시되는 바, 시기별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규정한 개별 요건을 갖춘 시점을 시설장 자격인정시점으로 한다.

나. 시기별 자격인정시점에 대한 세부기준

- '91. 8. 7. 이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등에 채용된 자로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91. 8. 8. 제정된 바, 시설장 자격인정시점은 '91. 8. 8.
- '05. 1. 29. 이전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의 개별 요건을 갖춘 시점
다만, '91. 8. 7. 이전 개별 요건을 갖춘 자의 자격인정시점은 '91. 8. 8.
-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의 개별 요건을 갖춘 시점

다만, '05. 1. 29.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자가 현행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05. 1. 29. 이전에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격인정시점은 '05. 1. 30.

5. 관련경력의 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가. 현행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경력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위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2)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나.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경력

1) 사회복지업무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IV. 시기별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세부기준

1. 현행규정('05. 1. 30. 이후 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가. 관련규정 및 자격기준

1)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¹⁾ 및 시행령 제21조(2005. 1. 30. 전면 개정 이후)

2) 시설장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 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이 있는 자
영아전담 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 12. 29.>

나. 자격검정 일반기준

1) 자격검정 대상

- 2005. 1. 30. 이후 위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2005. 1. 29.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현행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2) 자격검정 방법

-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해 우선 갖추어야 하는 자격(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등) 취득일자가 2005. 1. 29. 이전인 경우
 - 1차적으로 '05. 1. 29.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정, 갖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갖추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개정 법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우선 갖추어야 할 자격 취득일자가 2005. 1. 30.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예시>

Q : 2005. 1. 29.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1994. 2. 20.)한 후 보육시설에 4년 6개월 근무한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및 인정 시점은?

A :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인정 시점 2005. 1. 30.

- 보육교사 1급을 2005. 1. 29.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 : 불인정(5년 근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 2차적으로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 : 인정
 - 현행 규정은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이 인정
 - 다만, 보육시설 종사경력 2년 경과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자격 인정 시점은 2005. 1. 30.

3) 자격인정시점

-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시점
- 종전 규정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자가 현행 규정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자격기준을 갖춘 시점이 2005. 1. 29. 이전이라도 자격인정시점은 2005. 1. 30.로 본다.

<예시>

Q : 2005. 1. 29.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1994. 2. 20.)한 후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4년 경과한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A : 2005. 1. 30. 시설장 자격 인정

Q : 2005. 1. 29.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1994. 2. 20.)한 후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1년 경과한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A : 2006. 1. 30. 시설장 자격 인정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여부 및 인정 시점 판단

다. 관련경력의 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관할 시·군·구청에 종사자 임면 보고되어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 ※ 시설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2005. 1. 29. 이전 근무한 경력도 인정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16조 참고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란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란 시설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 경력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바) 종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폐지된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7120호)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 및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 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사)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위 가) ~ 바)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 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
 - 위 가) ~ 마)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 경력
 - 기관장 등으로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 서류
 - 공무원 직급 및 업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2) 아동간호업무 경력

가) 해당경력

-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나) 경력증명 서류

- 아동간호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병원 : 병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 보건소 : 보건소장 발행 경력증명서
 - 초등학교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아동간호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상세기술 요함)

라. 세부항목별 자격 검정 기준

1) 시설장 일반 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1차적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 검정 후 시설장 자격 검정

②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인정) 시점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부 기준에 의함.

③ 법 적용 기준

- '05. 1. 29. 이전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자
 - '05. 1. 29. 이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05. 1. 29. 이전에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05. 1. 30. 이후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자
 -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검정

④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유아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정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제외

② 경력 인정 기준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2급 자격 취득일자 증명서류 제출

③ 제출 서류

- 유치원 정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발급 대상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자격 인정 시점

- 종전 규정에서도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 한 바,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일로 봄.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취득한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법 제정일로 봄.

③ 제출서류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제외

② 경력 인정 기준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필요

③ 제출 서류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④ 유의사항

- 종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도 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불가능
- 따라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는 2005. 1. 29. 이전 종전 법 규정에 의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2005. 1. 30. 이후 시설장 자격 취득 불가능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사회복지사 2급 및 3급,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해당 없음.

②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법 적용 기준

- '05. 1. 29. 이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자
- 1차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 2차적으로(불인정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 '05. 1. 30.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자
- 현행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④ 제출 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⑤ 유의사항(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치)

- '05. 1. 29. 이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자
 - '05. 1. 29. 이전 종전 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05. 1. 29. 이전 종전 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 '05. 1. 30.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자 :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으로 시설장 자격 요건 중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내용 삭제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 없음.

②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필요
 - 간호사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법 적용 기준

- '05. 1. 29. 이전 간호사 자격 취득 자
 - 1차적으로 종전 법 규정에 따라 '05. 1. 29. 이전에 자격이 인정되는지 검정
 - 2차적으로(불인정 시)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 '05. 1. 30. 이후 간호사 자격 취득 자
 -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 검정

④ 제출 서류

- 간호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⑤ 유의사항(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치)

- '05. 1. 29.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자
 - '05. 1. 29. 이전 종전 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05. 1. 29. 이전 종전 법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 '05. 1. 30.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자 :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05. 1. 30.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으로 시설장 자격 요건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 삭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② 법 적용 기준

- '05. 1. 29. 이전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
 - 1차적으로 종전 법 규정에 따라 '05. 1. 29. 이전에 자격이 인정되는지 검정
 - 2차적으로(불인정 시)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자격 검정
- '05. 1. 30.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
 -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 검정

③ 자격인정시점

- 자격인정시점은 자격인정시점에 대한 기준 적용

<참고 예시>

Q : 2005. 1. 29.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보육관련 행정업무에 2년 종사한 자의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A :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 : 2008. 1. 29.

- 종전 법 규정에 의하면 보육관련 업무 경력이 3년을 경과하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나, 2005. 1. 29. 이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경력 5년이 경과해야 시설장 자격 인정

4)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2) 가정보육시설장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일반기준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는 당연히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1)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하여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

※ 종전 규정에 의거 2005. 1. 29. 이전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및 2005. 1. 30. 현재 (전문)대학 또는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 수료 중이던 자가 졸업할 경우에는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들에게는 보육업무 경력에 상관없이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증 발급

② 법 적용 기준

-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자에게는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증 발급
- 개정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자에게는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

③ 제출 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자격증명 서류)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3) 영아전담보육시설장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일반기준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는 당연히 영아전담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영아전담시설장 자격증 별도 발급 생략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해당 없음.

②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 필요
- 간호사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법 적용 기준

- 간호사 자격 취득자로서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일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일반기준 시설장 자격증 발급(별도 영아전담시설장 자격증 발급 생략)

- 일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영아전담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영아전담시설장 자격증 발급

4) 제출 서류

- 간호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4)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

장애아전담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은 일반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졸업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전공한 자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2)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자

학 과 명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특수심리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유아특수재활과
운동처방 및 재활전공	아동심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전공	치료특수교육과
재활공학협동과정	아동상담치료학과	재활선교전공	장애인복지학과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전공	언어치료학과
유아특수재활과	놀이치료학과	재활복지학전공	임상언어치료
재활공학과	작업치료과	인간재활학전공	언어청각교정
재활심리학과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특수재활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재활과학학과군	특수교육전공	재활복지과	언어교정과
직업재활학과	특수체육학과	자활 및 지역복지전공	
재활과학과	유아특수보육과		

- 이 외 추가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③ 법 적용 기준

- 반드시 일반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위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후 일반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도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④ 자격 인정 시점

- 일반시설장 자격기준 및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졸업)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

⑤ 제출 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 또는 증명 서류
- 졸업증명서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장애아보육시설 보육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한 경력

② 경력 인정 기준

- 일반시설장 자격 취득 이전 또는 이후에 장애아보육시설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

※ 반드시 일반 시설장 자격 취득 후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③ 자격 인정 시점

- 일반시설장 자격기준 및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

④ 제출 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 또는 증명서류
- 경력증명서(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장애아전담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인가증 사본, 장애아전담시설 지정서 사본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①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일반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7]에 의한 특별직무교육 중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② 자격 인정 시점

- 일반시설장 자격기준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점

③ 제출 서류

- 일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 또는 증명서류

- 보수교육 수료증(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5)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① 대상자 및 기준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장 자격 인정

②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 부설 보육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2. 종전규정('05. 1. 29. 이전 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가. 근거규정 및 시설장 자격기준

1) 근거규정

○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후 ~ 2005. 1. 30. 전면 개정 전

2) 시설장 자격기준

<p>1991. 8. 8. - 1996.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p>1996. 1. 6 - 2005.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동일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996. 1. 6> 8.~9. 동일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96·1·6> 11. 삭제 <96·1·6> 12. 동일
<p>(중복) 1998. 9. 4 - 2005. 1.9.</p>	<p>외국에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p>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나.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1) 발급대상자

- '05. 1. 29.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91. 8. 7. 이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도 시설장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2) 자격검정 방법

가) 일반적 검정방법

-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해 우선 갖추어야할 자격(보육교사 1급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등)을 2005. 1. 29. 이전에 갖춘 경우
 - 1차적으로 '05. 1. 29. 이전 위(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인정될 경우 시설장 자격증 발급
 -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우선 갖추어야할 자격을 2005. 1. 30. 이후 갖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예시>

Q : 2005. 1. 29.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업무에 2년 10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시설장 자격 여부

A : **시설장 자격 불인정**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일이 2005. 1. 29. 이전이므로 1차적으로 종전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2005. 1. 29.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시설장 자격 불인정
- 2차적으로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현행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2005. 1. 29. 이전에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2005. 1. 30. 이후 3년을 경과하더라도 시설장 자격 불인정

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 '05. 1. 29.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 '05. 1. 30. 이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 '05. 1. 29. 이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2) 참고
- 위 이외의 사유로 2005. 1. 30. 이후 졸업할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다) (전문)대학 졸업자(40인 미만 보육시설장 자격)

- '05. 1. 29.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 종전 규정에 따라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 '05. 1. 30. 이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 '05. 1. 29.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및 40인 미만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 위 이외의 사유로 2005. 1. 30. 이후 졸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2급 자격 인정 여부 검정
- ※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생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방법 적용
-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³⁾ 참고

2)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자격 인정 시점

-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시점으로 보나, 1991. 8. 7. 이전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 인정 시점을 1991. 8. 8.로 봄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1991. 8. 8. 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춘 자의 자격 인정 시점은 시행규칙 제정일로 간주

<예시>

Q : 1989. 2. 12. 대학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학위를 등록한 자의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은?

A : 시설장 자격 인정 시점 :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1991. 8. 8. 제정 된 바, 그 이전에 자격을 갖춘 자의 자격 취득 시점은 법 시행 시점인 1991. 8. 8.로 봄.

다. 관련경력 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1) 사회복지업무 경력

가)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4"에 종사한 경력(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 포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란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자 임면 보고된 후 종사한 근무경력을 말함.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수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별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판단기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을 근거로 판단
-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

라. 세부항목별 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①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등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기타 다른 법률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는 동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②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한 자

-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보육실습은 1998. 3. 1.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 ※ 보육교사 자격 검정 기준과 동일

[참고] 교과목 판단기준

기간	판단 기준	근거 법령
94. 2. 27. 까지	교과목 총 167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91. 8. 8. 제정 규칙
'94. 2. 28. ~ 98. 2. 28.	교과목 총 166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정학 원론 제외)	'94. 2. 28. 개정 규칙
'98.3.1. ~'05.1.29.	교과목 총 165과목 중 10과목 30학점 및 보육실습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현장실습 제외)	'96. 3. 1. 개정 규칙

③ 경력 인정 기준

- 졸업 후 2005. 1. 29. 이전까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④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로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위증 제출 요구 가능
- 경력증명서('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2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

①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종전의 교육법 및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05. 1. 29. 이전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 2005. 1. 29. 이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한 자

- 대학원에서 종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

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

- 다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및 학점이 부족할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보육실습 포함)과 연계 가능

※ 대학에서 모든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보육과 무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학에서 보육과 전혀 무관한 학과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는 대학원에서 모든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③ 법 적용 기준

- '05. 1. 29. 이전 대학원 졸업자
 -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05. 1. 30. 이후 졸업자
 - '05. 1. 30.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이던 자가 졸업할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 '05. 1. 29. 이전 대학원 입학자는 졸업 시 시설장 자격 인정(근거 :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④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3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제도 시행 전에 시행된 자격증으로 해당되지 않음.

②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 2005. 1. 29. 이전까지 위 조건 갖추지 못한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 여부 검정

③ 제출서류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4호 의사(한의사, 치과의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발급 대상자

-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1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의사(한의사, 치과의사)에 관한 사항 삭제된 바, 2005. 1. 30. 이후 조건이 충족된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예시>

Q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2005. 1. 29. 현재 8개월의 진료경력이 있는 자의 시설장 자격 인정 여부

A : 시설장 자격 불인정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사로서 진료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시설장 자격 인정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005. 1. 29. 이전까지 진료경력이 1년 이상인 자만 시설장 자격 인정

② 제출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1년 이상 진료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5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간호사·영양사 자격 소지자

- 4년제 대학 졸업 이외의 사유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년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 소지자

② 경력 인정 기준

-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 2005. 1. 29. 이전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개정 규정에 따라 자격 여부 검정

③ 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자격증, 간호사자격증, 영양사자격증 사본
 - ※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④ 유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경우 가능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시설장 자격증 발급 받도록 지도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의 경우 시설장 자격증 발급 시 보육자격검정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자격 인정 시점 확인

제6호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발급 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경력 인정 기준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 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7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 삭제

③ 제출서류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7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유아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등은 해당 없음.

② 경력 인정 기준

- 정교사 자격 취득 후 2005. 1. 29. 이전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교육업무 경력 필요
 - 교육업무 경력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③ 법 적용 기준

-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가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자격 불인정
 - ※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설장 자격 기준 중 중·고등학교 자격 소지자에 관한 사항 삭제

④ 자격 인정 시점

- 중·고등학교 정교사에 대한 규정은 '96. 1.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 추가된 바, '96. 1. 6. 이후를 자격 인정 시점으로 함.

⑤ 제출서류

- 정교사 자격증 사본(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경력증명서
 - 2005. 1. 29. 이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8호 교육법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발급 대상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제출서류

-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7급 이상의 공무원

-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② 경력 인정 기준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 종사한 경력
 -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도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기관장 등)에는 경력 불인정

③ 법 적용 기준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05. 1. 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인정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현행법은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4]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 경력 입증)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10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 발급 대상자

○ 2005. 1. 29. 이전에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취득한자

○ 2005. 1. 29. 이전에 (전문)대학 등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2005. 1. 29. 이전에 보육교사교육원에 입학하여 과정을 수료 중이던 자가 2005. 1. 30. 이후 졸업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위 사항 이외의 이유로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없음.

2] 자격인정 시점

○ 1996. 1. 5. 이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1996. 1. 6.

○ 1996. 1. 6. 이후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 자 : 보육교사 1, 2급 자격 취득일

※ 1996. 1. 5. 이전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영유아 30인 미만의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었으므로,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 취득시점을 1996. 1. 6.로 봄.

③ 제출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④ 기타사항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지도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의 경우 시설장 자격증 발급 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점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조치 할 것

제11호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96. 1. 6.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 '96. 1. 5. 이전에 승인 받은 자에 한함.)
-------------	---

① 발급 대상자

- '96. 1. 5.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장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자격 인정 시점

-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시점

③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승인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제12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보건사회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장 양성 교육훈련 시설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 1995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 1996년 ~ 1998년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보건복지부장관 위탁기관

②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 이수

-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은 1991년 ~ 1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③ 자격인정 시점

- 1991. 8. 7. 이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1991. 8. 8.
- 1991. 8. 8. 이후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 과정 수료 일자
- 조건부 시설장 인가증을 교부 받은 자 : 인가증에 제시한 조건 충족일
 - ※ 조건부 시설장 인가증은 용자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점인 1996년 ~ 1998년에 발급 된 바, 인가증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함.

④ 제출서류

-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 관련서류
- 조건부 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별도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1998. 9. 4. ~ 2005. 1. 29.)

① 발급대상자

- 2005. 1. 29. 이전에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 및 2005. 1. 30. 현재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동 조항 삭제

② 자격 인정 시점

-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은 시점
- ※ 외국에서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바, 자격 인정 시점을 승인을 받은 날로 봄.

③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자격증명 서류 원본 및 번역본
- ※ 재외공관장이란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한국대사관을 말함.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3.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채용된 자에 대한 자격검정

가. 근거규정 및 시설장 자격인정 배경

1)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부칙 제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95호, 1991. 8. 8. 제정) 부칙 제3조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2) 시설장 자격인정 배경

- '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운영되던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사업장 탁아시설, 미인가 탁아시설 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보육시설로 인정
-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자는 1994. 1. 13일까지 보육시설종사자(시설장 및 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고,
- 1991. 8. 8. 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

나. 일반적 자격검정 기준

1) 관련법규 및 시설장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08호, 1989. 9. 19. 개정) 제12조제2항5)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한의사, 치과의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보육사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탁아시설에 한한다)

2) 발급대상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 자격 인정

- 1991. 8. 7. 이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기준을 1991. 8. 7. 이전에 충족한 자

5) 제12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수 및 자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3) 검정방법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 등에 채용된 자로 1991. 8. 7.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위 기준 적용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 등에 채용되었던 자라도 1991. 8. 7. 이전에 위 세부 항목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 여부 검정
 - ※ 보육시설로 전환된 시설에 근무하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 양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한 바, 법 시행이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4) 자격인정시점

- '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자격 인정 시점은 1991. 8. 8.로 봄

다. 관련경력 인정범위 및 판단기준

1)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 범위 및 판단기준

가)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 범위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업무경력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1991. 8. 7. 이전 근무 경력

- 1991. 8. 7.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력
-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6)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3656호, 1983. 5. 21. 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린보복지·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모자복지·의료보호·사회복지관운영·완라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심신장애자복지법 5. 윤락행위등방지법

나)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검정 기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판단
-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

라. 세부항목별 자격검정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관련 학과 전공·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아래 사회복지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관련 학과 인정 범위>

①사회복지학과 ②사회사업학과 ③사회복지행정학과 ④아동학과 ⑤ 아동복지학과 ⑥유아교육학과 ⑦사회개발학과 ⑧사회학과 ⑨특수교육학과 ⑩ 심리학과 ⑪가정관리학과 ⑫간호학과 ⑬의학과 ⑭가정교육과

② 경력 인정 기준

- 경력은 1991. 8. 7. 이전 경력에 한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 필요

③ 제출서류

-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1991. 8. 7.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2 의사(한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적 검정 기준

- '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의사(한의사, 치과 의사 포함)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 졸업자의 경우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시설장 자격 인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학과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
 -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91. 8. 7. 이전)
- 졸업증명서

- 양성과정이수 증명서/자격검정시험합격증서(4년제 관련학과 외 졸업자)
- 경력증명서
 - 1991. 8. 7.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

①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력 인정

②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91. 8. 7. 이전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 연구한 경력
- 교부신청서 및 사진(3cm×4cm) 2매

5	보육사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① 보육사 1급의 경우

(1) 자격인정 대상자

- 1991. 8. 7. 이전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육사 1급

-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②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③ 보육사 2급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③-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③-2. 보육사3급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③-3.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④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
- 사회복지업무 경력(7년 이상) 증명서류
- 보육사 1급 자격증명서
 - ①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 졸업 증명서
 - ② 사회복지관련학과 이외의 학과 대학 졸업 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 ③ 보육사 2급 자격 증명서류,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 ③-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③-2. 보육사 3급 자격 증명서류, 사회복지업무 경력(3년 이상)증명서

류, 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③-2-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 졸업 증명서

③-2-2.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 합격증

④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②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1) 자격인정 대상자

-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업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출서류

-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 등 채용증명서류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노동부장관 발급)
- 사회복지업무 경력(7년 이상) 증명서

③ 간호사의 경우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
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④ 영양사의 경우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
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6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적 검정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적 검정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함)

① 일반적 검정기준

- 1991. 8. 8.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장 자격 인정
-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정이 불필요하며,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 검정 기준 적용

4. 보육시설 및 보육종자사 자격 변천

가. 제1기 탁아시설(1962. 1. 1. ~ 1983. 2. 28.)

1)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62. 1. 1. ~ '81. 4. 12.), 아동복지법('81. 4. 13. ~ '83. 2. 28.)

2) 시설정의

- '탁아시설'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9호)

※ '탁아시설'을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아동복지법('61. 12. 30. 제정) 제3조]

3) 시설 유형

설립주체	설치방법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설치 (시·군이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 필요)	
재단법인	시·도지사의 인가	

※ 총 691개의 탁아시설이 설치·운영됨.

【참고】 민간 개인이 설립한 탁아시설

- 아동복지법에서는 민간개인이 탁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민간 설립 탁아시설 증설을 목적으로 1968년 “미인가 탁아 시설의 임시 조치 요령” 공포
- 이전에는 법인체만이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로 많은 탁아 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시설명은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도록 함
- 이러한 조치로 탁아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어 1976년 동 조치령을 폐기하였으며, 민간 탁아시설 신규 신설 규제는 물론 기존의 민간 탁아 시설도 법인으로 변경 할 것을 제도화함.

- 그리하여 탁아 시설의 수가 감소되고 이것은 '85년 이후 보사부의 실적 평가의 저하의 배경이 되어 유아 교육 진흥 계획 협의 시 보사부는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4) 시설종사자 관련 규정

- 아동복지시설의 장(법 제3조제2항) : 아동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아동복지시설설치기준령(1962.10.15. 제정) 제44조에서 “탁아시설에는 보모와 간호원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5) 소관부처 : 보건사회부

나. 새마을유아원(1983. 3. 1. ~ 1989. 9. 18.)

—<배 경>—

- 1980년 제5공화국출범과 함께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개혁 시책으로 채택되고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를 꾀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시·군·구 마다 1개소씩 시범 설치·운영
- 1982년 유아교육 진흥계획의 확정으로 기존의 아동 보육 기능을 담당했던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 유아원, 민간 유아원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
-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공포로 새마을유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부가 시도한 유아교육 진흥계획은 법·제도상 문교부 장관의 유치원과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됨.

1)법적근거

- 유아교육진흥법(1982. 12. 31. 제정, 1983. 3. 1. 시행)

2) 시설정의

-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을 말함.(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 '새마을유아원'을 유아교육기관의 하나로 규정함

3) 시설유형

설립주체	설립방법	근거
특별시장, 직할시장, 군수, 시장	자체 설치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	법 제8조
법인, 단체, 개인	시장·군수의 인가로 설립	법 제9조

4) 시설종사자 관련 규정

가) 시설종사자 정의

- 원장 :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당해 새마을유아원을 대표하는 자
- 원감 :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고 원아를 보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자
- 교사 :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및 원감의 사고 시 원장의 직무대행
- 보육사 : 영아반의 원아를 보육
※ 근거 : 유아교육진흥법 제15조

나) 종사자 배치 기준

- 필수 종사자 : 원장(명예직), 교사, 보육사
- 임의 종사자 : 원감, 사무직원
※ 근거 : 유아교육진흥법 제15조

다) 종사자 자격 기준

자격구분	자격기준
원장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원감·교사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보육사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보육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원칙적으로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배치하여야 함.
- 기존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암묵적 예외 인정
- ※ 6) 기존시설(탁아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참조

5) 소관부처

- 교육부-법제정·장학지도, 보건사회부-보건의료, 내무부-시설운영 및 행정지도

6) 기존시설(탁아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 법 시행 이전인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정책에 따라 정책적으로 탁아시설, 새마을협동유아원⁷), 농번기탁아소, 민간유아원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
- 1983년 3월 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법 시행 당시 인가청이 설립하였거나 인가청에 등록된 새마을유아원 및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탁아시설(이하 “기존 새마을유아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 인정(부칙2항)

7) 1980년 제5공화국출범과 함께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개혁 시책으로 채택되고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시·군·구 마다 1개소씩 시범 설치·운영

7) 기존시설(탁아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탁아시설을 포함하여 기존 새마을유아원 근무하던 자 중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동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별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무자격자가 계속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

8)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의 관계

—<참 고>—

1989. 9. 19.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 및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으로 새마을유아원은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탁아시설, 보육시설, 유치원으로 전환된 시설로 분화됨.

- 새마을유아원은 1989. 9. 19.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라 1990. 9. 18. 까지 신고하여 탁아시설로 전환된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된 시설, 유치원으로 전환된 시설로 분화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992. 1. 13.까지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사업 지침에서 그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1991. 12. 31. 개정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는 1993. 12. 31.까지 기존 새마을유아원은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의 설치·운영을 유예하였음.
- 1998. 9. 17. 개정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새마을유아원의 규정 모두 삭제

다. 제2기 탁아시설(1989. 9. 19. ~ 1991. 8. 7.)

<배 경>

- 탁아시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면서 양적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새마을유아원은 탁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재정 지원 문제와 결합하여 점차 유치원화 되어 탁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
- 1988년 서울시에서 31개의 저소득층 탁아소(88시립 탁아소)를 신설하면서 기존 비영리 민간 탁아소(미인가 탁아시설)와 갈등 초래
-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 탁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발표

1)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1981. 4. 13. 제정), 시행령(1989. 9. 19. 개정시행)

2) 시설정의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은 제외(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14호)
※'탁아시설'을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

3) 시설유형

설립주체	설립방법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설치 (시·군이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시·도지사의 인가로 설립	
민간(가정탁아)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 설립	

※ 민간 탁아소(미인가 탁아시설)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م.

4) 시설종사자 관련 규정

가) 시설종사자 정의

-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 다른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나) 종사자 배치 기준

- 일반탁아시설과 가정탁아시설로 구분하여 영유아 수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제시
 - 일반탁아시설 : 시설장, 총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 가정탁아시설 : 보육사
- ※ 근거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다) 종사자 자격 기준

- 시설장, 총무, 보육사 1·2·3급의 자격 기준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별표2]에서 세부적으로 명시

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6)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
⇒ 1990. 9. 19.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탁아시설로 인정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이 아닌 자(가정탁아)가 설립·운영하는 새마을유아원
⇒ 1990. 9. 19.까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탁아시설로 인정
- ※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으로 계속 존속

<참 고>

1989. 9. 19.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규정은 두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는 민간 탁아소(미인가 탁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7) 기존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 탁아시설로 인정된 시설은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탁아시설 종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자격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무자격자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보육사 양성교육 실시

8) 기타 : 탁아·운영규정제정(90.1.15)-훈령

라. 제1기 보육시설(1991. 8. 8. ~ 2005. 1. 29.)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1991. 1. 14. 제정·시행), 시행령(8. 1. 제정·시행), 시행규칙(91. 8. 8. 제정·시행)

2) 시설정의

-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 2호)

3) 시설유형

구분	설치주체	설치방법	근거
국공립	국가, 지자체	자체 설치	
민간	법인, 단체, 개인	시·군·구청장의 인가로 설치	
직장	사업주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등)	시·군·구청장의 인가로 설치	
가정	개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	

※ 1997. 8. 22. 영유아보육법 개정 : 모든 보육시설 신고제로 전환

4) 시설종사자 관련 규정

가) 시설종사자 정의

- 법 제2조제5호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개별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음.

※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의(법 제2조제4호)

-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종사자 배치 기준

- 법 제9조제1항8)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의무 배치 종사자로 규정
-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서 영유아 수에 따른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의 배치 기준 제시

다) 종사자 자격 기준

- 법 제9조제2항9)에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1·2급의 세부 자격 기준 명시

5)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04. 6. 10.)

6)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1991. 1. 14. 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조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탁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미인가 및 미신고 탁아시설을 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8) 영유아보육법제9조제1항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9) 영유아보육법제9조제2항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탁아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부칙 제2조)

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업장탁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부칙 제3조)

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1992. 1. 13.까지)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부칙 제4조)
 - 사립 : 1992. 1. 13.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전환 신고할 경우
 - 공립 : 1992. 1. 13.까지 시군구청장이 전환 여부 결정
- 보육사업 지침에서 1992. 1. 14. 이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92. 1. 14. 이후 전환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종사자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음.

※ 새마을유아원은 보육시설로 전환되는 시설과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시설로 구분되었으며, 유아교육진흥법에는 1900. 00. 00.까지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

라) 미인가·미신고 탁아시설

-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1991. 7. 13.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

7) 기존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¹⁰⁾에 따라 기존시설(탁아시설, 사업장탁아시설, 시범탁아소, 새마을유아원, 미인가 탁아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된 경우 1994. 1. 13.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1994. 1. 13.까지 보육시설에 무자격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10)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6조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탁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양성교육 과정 교육훈련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11)에 따라, 1991. 8. 7.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인정

마. 제2기 보육시설(2005. 1. 30. ~)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04. 1. 29. 개정, '05. 1. 30.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05. 1. 29. 개정, '05. 1. 30. 시행)

2) 시설정의

-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법 제2조제2호)

3) 시설유형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육시설로 세분화(법 제10조)
- 국공립은 제외한 시설의 설치는 인가제로 전환(법 제13조)

4) 시설종사자 관련 규정

가) 시설종사자 정의

- 법 제2조제5호12)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개별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음.

※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의(법 제2조제5호)

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함.

-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함.

나) 종사자 배치 기준

- 법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종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서 시설장 및 영유아 수에 따른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의 배치 기준 제시
- 의사(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은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종사자로 규정

다) 종사자 자격 기준

- 법 제21조제2항13)에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2급의 세부 자격 기준 명시
- 보육교사의 경우 '05. 1. 30. 이후 자격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받은 후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설장의 경우 '06. 12. 30. 이후 자격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받은 후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이전에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07. 12. 29.까지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규정

5)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 '05. 1. 29.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은 개정법에 의해 인가된 시설로 인정

6) 종전법 규정에 의한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종전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 개정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로 인정
- 2005. 1. 29. 이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 전공중인 자에 대한 특례 인정 ⇒ 종전규정에 의한 교과목 및 자격등급 인정

13)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에 대한 특례 인정
 - 개정 법 시행 전 보육교사 1,2급 자격 취득 자
 -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할 경우
 - 법 시행 당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을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그 과정을 수료할 경우

[보육시설 변천사 개요]

연혁	시설 변천 내용	관련근거 및 경과
62~81. 3.	탁아시설 691개 설치(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 아동복지시설에 보육시설 포함	아동복지법(복지부)
81. 4. 13. ~ 83. 2.	탁아시설	아동복지법(복지부)
83. 3. 1. ~ 89. 9. 18	탁아시설,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탁아소 →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사회복지시설에서 탁아시설 제외) -자치체 운영 시설 법안(단체·개인 운영(인가제)) 직장탁아시설 도입(87. 1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유아교육진흥법(82. 12. 31. 제정) · 교육부-법제정·장학지도, · 보건사회부-보건의료, · 내무부-시설운영 및 행정지도
89. 9. 19. ~ 91. 8. 7.	탁아시설 부활(사회복지시설로 규정) 유아원→탁아시설로 전환[법 시행 1년 이내(90.9.18)]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침에서 92.1.13.까지로 연장] 92.1.14.이후 전환:시설 및 종사자기준 갖추어야함 미인가탁아→시장군수신고[법 시행 6개월 이내]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89.9.19.) · 탁아시설 설치·운영 근거 부활 동법시행규칙 개정(90. 1.) · 탁아시설 설치·운영기준 삼입 탁아·운영규정제정(90.1.15)-훈령
91. 8. 8. ~	보육시설 정식 출현(영유아보육법 근거)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로 인정(92.1.13.까지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미인가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6개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정(91.1.14) 동법시행령 제정(91.8.1) 동법시행규칙제정(91.8.8) 탁아·운영규정폐지(91.8.26) 탁아·운영규정폐지(91.8.26)

V.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1. 자격증 발급 주체 및 자격증의 종류

가.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 주체

- 보육시설장 자격증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검정하고,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설치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보육시설장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 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따라서, 보육시설장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민원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회신한다.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 <http://www.ctcm.or.kr>, ☎ 1577-5654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내

나. 보육시설장 자격증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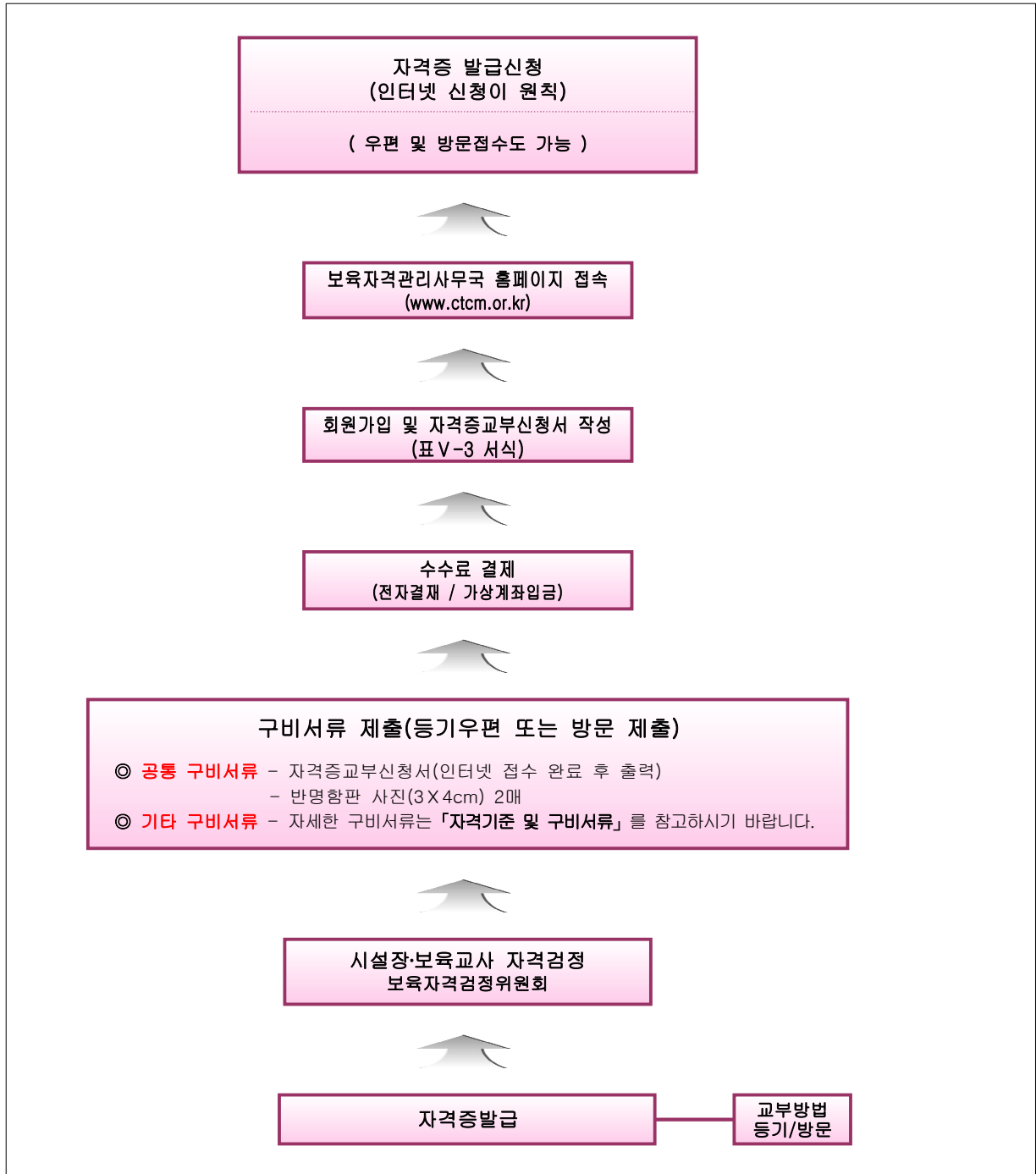
- 40인 미만 보육시설장
 - 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가정보육시설장
 -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영아전담보육시설장
 - 영아전담보육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 일반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추어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영아전담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 일반보육시설장
 -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
 -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2.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양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제 호</div>	← 발급번호
<h3 style="margin: 0;">보육시설장 자격증</h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3cm×4cm</p> </div>	
<p>성 명 : 홍길동</p> <p>주민등록번호 :</p> <p>자 격 : 40인미만(2004-2-10) 일반(2006-2-1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세부 자격 종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자격 인정 시점</p>
<p>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0 auto;">2007년 2월 15일</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발급일자</p>	
<h2 style="margin: 0;">여 성 가 족 부 장 관</h2>	

3.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절차



※ 자격증 발급 신청은 신청자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www.ctcm.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인터넷 발급 신청 요령

● 인터넷 신청 방법 (회원가입)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CTCM The office for Childcare Teachers Certification Management

사무국 소개 자격검정기준 자격증 신청 자료실 게시판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일반회원가입(내국인) >> 이용약관동의 HOME > 회원관리 > 회원가입

약관동의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인터넷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실명확인제를 실시합니다.

실명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실명확인**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일반회원가입(내국인) >> 회원정보입력 HOME > 회원관리 > 회원가입

회원정보입력

성명 정지연 주민등록번호 801213-*****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회망ID 중복확인 3~12자의 영문,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6~12자의 영문,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질문 :: 선택하세요 ::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여기에서 선택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답변 위에서 선택한 질문의 답을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미답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 직접입력 ::
비밀번호 분실시에 비밀번호를 찾으시려면 자주 사용하지는 메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1980 12 13 양력 음력

주소 - 우편번호검색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확인받을 수 있는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세요. 핸드폰 번호 또는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입력입니다.

직업 :: 선택하세요 :: 직장명

시설종류 :: 선택하세요 :: 시설명

메일링서비스여부 예 아니오

확인 **취소**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The office for Childcare Teachers Certification Management

사무국 소개 자격검정기준 자격증 신청 자료실 게시판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완료
 member login

- ▶ 회원정보수정
- ▶ 비밀번호변경
- ▶ 회원탈퇴

회원가입 완료
 축하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보육교사 자격 관리 사무국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The office for Childcare Teachers Certification Management

사무국 소개 자격검정기준 자격증 신청 자료실 게시판

정확한 자격기준 정보 제공

나의자격기준

보육교사 시설장

● 선택해주세요~!

나의 자격기준과 구비서류 알아보기?

자격검정기준

- ▶ 자격검정기준
- ▶ 전체기준
- ▶ 나의자격기준
 - ▶ 추가자격기준안내
 - ▶ 영유아보육법과목 및실습기준

일반 시설장 소규모 및 전담보육시설장

신청할 자격종류 클릭!

HOME / [회원정보수정](#) / [로그아웃](#) / [개인정보정책](#) / [사이트맵](#)

CTCM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The Office for Childcare Teachers Certification Management

사무국 소개 | 자격검정기준 | **자격증 신청** | 자료실 | 게시판

자격증신청방법 | 자격증신청 | 나의 자격증신청현황

빠르고 편리한 개인 인터넷 접수 서비스

자격증신청
Abilitation

- ☐ 자격증신청방법
- ☑ **자격증신청**
- ☐ 자격자격을 인정받음
- ☐ 자격증신청방법(단체)

1 자격증신청 HOME > 자격증신청 > 자격증신청

1 응시원서작성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보육교사/시설장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청종류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2 자격증신청에 대한 설명

신규신청일 경우 보육교사/시설장 자격종류와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종류를 함께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종류에 대한 안내사항
신규신청일 경우 보육교사/시설장 자격종류와 신청구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신청종류에 대해 중복신청이 가능하므로 한 번 신청 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종을 모두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설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40인 미만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 >](#)

시설장 신청구분 선택

신청구분(신규/재교부) 선택

신청종류 선택

1 응시원서작성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보육교사/시설장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청종류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빠르고 편리한 개인 인터넷 접수 서비스

HOME > 개인자격검정신청 > 자격증신청

1 자격증신청

용시원서작성 → 학력및세부사항작성 → 배송지입력및 → 접수완료

학력사항 입력

1 학력사항 *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최종학력

학교

전공또는 부전공학과목

재학기간 년 월 ~ 년 월

학위등록번호

* 학력사항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최종학력, 학교전공을 입력하고 재학기간 및 학위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학력사항 내용이 기록됩니다.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명	학위등록번호	삭제/수정

1 교육훈련시설

시설명

훈련기간 년 월 ~ 년 월

수료증번호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은 시설명을 검색하여 입력하고, 교육훈련기간 및 수료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교육훈련시설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훈련기간	시설명

1 근무경력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자격구분(등급)

발령자

* 근무경력사항은 근무시설 명, 근무기간, 자격등급 및 경력증명서발령자를 입력합니다.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근무경력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근무경력 입력 (해당자)

보수교육 입력 (해당자)

보수교육

시설명

보수교육기간 ~

교육훈련내용

*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이수한 시설명을 검색하여 입력하고 보수교육기간 및 수료증번호, 보수교육종류를 입력합니다. (보수교육종류입력란 추가요망)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보수교육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보수교육기간	시설명	교육훈련내용	삭제/수정
--------	-----	--------	-------

※ 학력, 교육훈련시설, 근무경력, 보수교육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추가버튼을 눌러 계속 입력합니다. 추가 입력할 내용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단계 ▶ 다음단계 ▶



자격증신청

HOME > 개인자격검정신청 > 자격증신청



자격증 수령지 입력

배송지입력

기본정보

> 성명 > 이메일

>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주소

배송지정보

기본정보와 동일

> 수령인

> 수령인 휴대전화 > 수령인 일반전화

> 주소

수수료 결제 방법 선택

수수료결제

> 결제금액 원 * 주의 : 결제 수수료는 1인당 10,000 원입니다.

> 결제방법 선택

-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실시간 결제처리를 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상계좌로 입금시 실시간 결제처리가 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계좌로 실시간계좌이체 하는 방식입니다.
- 무통장입금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계좌번호
농협 021-01-172697, 예금주 :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직접입력 하는방식입니다.
결제 확인에 대한 처리시간이 소요 됩니다.

수수료결제시 안내사항설명

- > 무통장 입금 및 ATM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들 중 하나로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ATM)를 할경우 영수증 복사본 또는 영수증을 구비서류와 함께 저희 사무국으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폰뱅킹을 이용하셨을 경우는 반드시 입금확인계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통명미인으로 인한 신청자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시 자격증을 신청하신 신청자명과 실제 입금하신 분의 이름이 똑같아야 입금확인이 됩니다.
- > 만약 다를경우 반드시 입금확인계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자동화기기(ATM)또는 무통장입금 하신분은 영수증을 한달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시 본인의 실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850212

◀ 이전단계 ▶ 결제하기

자격증 신청 완료

자격증신청



신청결과

> **메세지** 무통장입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접수확인서출력 ▶ 신청진행현황보기

5.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보육시설장 자격증교부신청서, 사진(3cm×4cm)2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 채용된 자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2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91.8.7이전 진료경력이 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3호)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이외) ① 졸업증명서 ② 양성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검정시험합격증서 사본 ③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4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제5호)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사 1급 자격 증명서류 또는 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6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91.8.7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7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상세기술 포함)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8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 채용된 자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어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2호)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91.8.7이전 진료경력이 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3호)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	전문대학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이외)	① 졸업증명서 ② 양성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검정시험합격증서 사본 ③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4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5호)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사 1급 자격 증명서류 또는 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6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91.8.7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7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제8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VI.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자격증 신청관련 공통 질의사항

<Q 1>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자격 인정을 받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A 1: 종전 법에 의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그대로 자격을 인정(2005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3조)하되, 본인이 자격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2>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A 2. 자격검정 절차는 사무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를 통해 수령한 후,
2-1. 자격요건이 명확한 경우, 사무국에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자격검정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2.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증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Q 3>

자격검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일을 합니까?

A 3-1. 자격검정위원회는 보육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A 3-2. 보육관련 유사교과목 심의, 기타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Q 4>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A 4. 앞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2005. 2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1조).

<Q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과목확인서)

A 5.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자격이 불인정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Q 6>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6.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을 통해 사무국으로 발송하고 수수료(10,000원)는 무통장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10,000원)를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신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의 '질의신청'으로 결제확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수수료(10,000원)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Q 7>

자격증 신청 시 신청진행현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7. 사무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나의 진행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완료 - 자격심사 중 - 판정완료 - 발송대기 중 - 발송완료].

※ 자격증이 반송된 경우, [반송 - 반송접수 중 - 재발송 완료]과정이 추가 됩니다.

<Q 8>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8-1. 자격증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A 8-2. 재교부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① 분실 재교부 : 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 ② 훼손 재교부 : 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훼손된 자격증 원본
- ③ 성명변경 재교부 : 사진2매, 재교부신청서, 호적등본, 변경 전 자격증
- ④ 주민등록번호변경 재교부 : 사진2매, 재교부신청서, 호적등본, 변경 전 자격증

<Q 9>

접수된 서류와 수수료(10,000원)는 반환 되나요?

A 9.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10,000원)는 '나의 진행현황'에서 '서류접수완

료'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이 불
인정 된 경우 수수료(10,000원)와 검정완료 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보육시설장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Q 1>

여러 종류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시설장 자격
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A 1. 한 번에 한 종류의 시설장 자격을 신청해야 하므로 가장 상위의 자
격에 해당하는 종류의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장애아전담>일반>
가정).

예시1) 일반시설, 40인 미만 시설, 가정보육시설의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상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일반 시설장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장애아전담시설, 일반시설, 40인 미만 시설의 보육시설장 자
격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상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아전담시설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

보육시설장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2. 자격인정일자와 자격증 신청 종류별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해당구비서류는 '보육시설장 시기별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를 참
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구비서류

- ① 보육시설장자격증 교부신청서(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단, 재발급 시 보육시설장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 ② 사진(3cm×4cm) 2매
- ③ 수수료 1만원(전자결제, 무통장 입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9조)

3.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Q 1>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1. 자격인정일자와 자격증 신청 등급별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 해당구비서류는 '보육교사 시기별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구비서류

- ①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단, 재발급 시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 ② 사진(3cm×4cm) 2매
- ③ 수수료 1만원(전자결제, 무통장 입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9조)

<Q 2>

보육실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A 2-1. 영유아보육법(1996.1 개정)에 의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에서 4주(200시간)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98.3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 A 2-2. 영유아보육법(2005.1 개정)에 의해 2006년부터는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 등록)에서 실습지도교사가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게 4주(16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야간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 등의 경우 2회로 나누어 보육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Q 3>

유사교과목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까?

- A 3.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대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199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법령에 명시된 보육관련 교과목과 이수한 교과목명이 상이할 경우 유사교과목확인서(홈페이지 참고)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유사교과목확인서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관련교과목은 유사교과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별첨 >

현직 보육시설장 권역별 자격증 발급 신청 시기

※ 현직 시설장을 대상으로 발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각 권역을 구분하여 해당 월에 발급함.

월	발급 대상 권역	비 고
1~2	서울 지역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집중 시기
3~4	부산, 울산, 경남 지역	
5~7	인천, 경기 지역	
8	광주, 전남, 전북 지역	
9	대전, 충북, 충남, 제주 지역	
10	대구, 경북, 강원 지역	
11~12	개별 발급(현직 보육시설장)	

※ 해당 월에 발급 받지 못한 현직 보육시설장은 개별발급 시기인 11월~12월에 신청 가능

참고) 영유아보육법 부칙② (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